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

- 일시_ 2012년 9월 26일(수), 14:00 ~ 17:00
- 장소_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

주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주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프로그램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

| 시간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
| 13:30~14:00 | 등록 | |
| 14:00~14:10 | 개회사 | 김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 | 환영사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
| | 축사 | 국회의원 안명옥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
| 14:10~15:30 | 주제 발표 | <p>좌장: 김영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여성의 피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명진 소장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 성매매 여성과 사회 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성매매 정책의 해외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미례 정책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그간 성매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대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원) |
| 15:30~16: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 16:30~17:00 | 폐회 | |

목 차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

주제발표

1. 성매매 여성의 피해 상황 1
고명진 소장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2. 성매매 여성과 사회 불평등 11
정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 성매매 정책의 해외동향 25
정미래 정책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4. 그간 성매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대안 모색 47
원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원)

부록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9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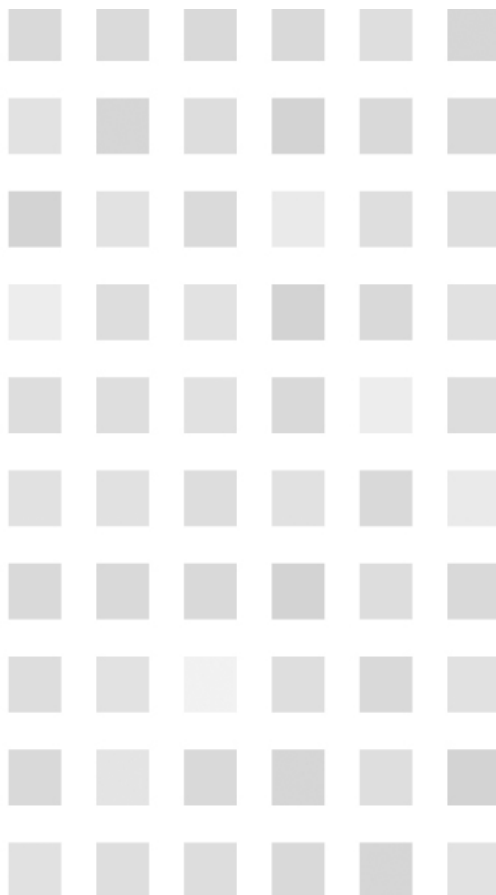


주제발표 1 |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

성매매 여성의 피해 상황

고명진 소장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1 성매매 여성의 피해 상황

고명진 소장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정리하다 보면, 어쩌면 한 존재의 삶의 가치가 이 사회 속에서 이리도 가볍게 취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에 대한 회한으로 인해 깊은 나락으로 빠지곤 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갈취, 매매행위 등의 시스템은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사회에서 중범죄로 인식하는 인신매매¹⁾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인식된다.

그렇기에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지위와 무게는 너무나 가볍고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착취와 신체 구속,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낮은 실정이다.

성매매방지법 8주년을 맞이한 오늘, 현장의 사례와 언론보도가 된 사례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의 피해상황을 살펴봄으로써의 현실에서 여전히 마주하게 되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권리침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이 협약을 보충하는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에 의한 인신매매의 정의는 이렇다.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를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범죄의 피해자로 사회적 이슈가 된 성매매 피해 여성들

○ 오랜 시간 동안 성매매 여성들은 강력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었다.

성매매 여성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함께 분개했던 1992년 윤금이씨 살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촉발이 되었던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과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사건에 이어서 2005년 미아리 화재사건, 2006년 광주 송정리 화재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2004년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의한 살인 사건²⁾, 2010년에 이슈가 된 일본에서 목이 잘려 발견된 한국인 하루꼬 사건, 포항 성매매 여성 연쇄자살 사건 등 매년 끔찍한 사건 사고의 피해 대상자로서 등장 한다³⁾.

○ 2012년 상반기 언론보도 사례

| 범죄유형 | 기사 내용 | 출처 | 일시 |
|-----------------|--|-----------|----------|
| 살인 | 부산 동래구의 단골 호프집에서 업주와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신 모 씨 체포, 경찰은 참혹한 주검 때문에 원한 관계에 의한 잔혹 복수극으로 판단했으나 살해 이유는 뜻밖이었음, 새벽 화장실을 다녀온 신 씨는 업주와 여종업원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들을 살해한 것 | 미디어 오늘 | 2012.09. |
| 협박 강도 성폭행 | 대전 둔산 경찰서는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흥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성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종업원들이 성매매 등의 약점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남 | 대전 CBS | 2012.08. |

2) 미국에서 성매매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사망률 조사결과 살인에 의한 사망자수가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3) 성매매 여성의 사망률은 전체인구의 사망률 보다 40배가 높다는 캐나다 포르노그래피 및 성매매특별위원회(1985)의 연구 결과가 있음.

| 범죄유형 | 기사 내용 | 출처 | 일시 |
|----------------------|--|------|----------|
| 협박 감금 불법 사채 | 대전 둔산 경찰서는 21일 선불금을 갚으라며 여종업원을 감금·협박, 김 모(여·32)씨를 서구 괴정동의 한 사무실로 데려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협박하고, 공주시 신관동의 또 다른 사무실에 7시간가량을 감금, ‘엄마라도 불러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협박하며 감금함 | 중도일보 | 2012.08. |
| 살인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모(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 A(32)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 CBS | 2012.07. |
| 살인 |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모텔에서 주점 여종업원인 A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 | CBS | 2012.07. |
| 실종 | 제주도에서 40대 여성 다방 종업원이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실종 당일 한 남성과 다방을 나섰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찾고 있음 | 동아닷컴 | 2012.07. |
| 폭행 성폭행 |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5대 폭력(조폭·학교폭력·주폭·갈취폭력·성폭력)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구속되기도 했음 | 뉴시스 | 2012.07. |
| 불법고리 사채 성폭행 | 한 사채업자는 유흥업소 여종업원들만 골라 돈을 빌려준 뒤 500%대의 높은 이자는 물론 성폭행까지 일삼았음 | KBS | 2012.05. |

2 상담사례를 통해 본 피해 실태

: 다시함께상담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가. 신체적 위협과 폭력 : 업주, 성 구매자, 업소 삼촌들에 의한 폭력

업주들은 여성들과 종속적 관계 유지하고 있어 쉽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 구매자들은 돈을 주고 여성을 샀다고 생각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며 폭력까지 행

사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폭력적인 성산업체계에 고립되어있기 때문에 구타, 주먹질,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감금 등이 자주 일어난다.

○ 업주에 의한 폭력

룸살롱에서 함께 일하던 동생이 업주로부터 흥기로 위협 당하며 심하게 맞아 입원했어요.

○ 업소 삼촌에 의한 폭력

미친년, 씨발년, 죽일 년 등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맥주잔 하나 남은 것을 마시고 나한테 던져 깨버렸고, 또 테이블 위로 신발을 신은 채 올라와서 발로차고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다. 난 반항할 시간도 없이 테이블 바닥에 엎어졌고 사장이 내 머리를 손에 칭칭 감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찼다.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리고 모든 선불은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다시 내 머리를 칭칭 손에 감고 테이블 바닥을 끌고 다녔다.

○ 성 구매자에 의한 폭력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온 후, 갑자기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보이면서 반지랑 목걸이를 빼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더 이상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걸이랑 반지를 빼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빼고 나서도 진짜냐고 계속 물으며 만약 팔아도 돈 안 나오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나. 성폭력 : 성희롱, 성추행, 강간 : 업주, 성 구매자, 업소 삼촌들에 의한 감금과 성폭력

○ 성 구매자에 의한 성폭력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가출 후 갈 곳이 없던 저를 집으로 데려가 옷을 벗으라 하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시키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주일 중 며칠을 제외하고는 계속 강간과 추행을 했습니다.

다. 경제적 착취 : 벌금, 맞보증, 고리사채, 물품강매 등 : 업주, 성 구매자, 업소 삼촌,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착취

성산업시스템에서는 별도의 경제 시스템이 있는데 포커스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가 주를 이룬다. 겉으로는 월수입이 일반인 보다 월등히 높은 듯 하나 각종 명목의 벌금, 맞보증 채무, 외출을 제한하면서 고가의 옷과 화장품을 강매하게 하거나, 성형을 받게 하거나, 보험이나 계를 들게 하는 등 월수입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로 빠져나가고 나면 빚만 떠안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간 여성이 잡혀오면 탈출했던 기간 동안의 벌금과 찾으러 다니 비용을 합산해 빚으로 올리거나 영업에 필요한 돈을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등 여러 형태의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사례 1) 성형수술 강요

“야, 손님들이 너보고 너무 말랐대. 요즘에 아무리 마른 게 대세라지만 손님들은 성적 매력 떨어진다고 하잖아, 보톡스를 맞아서 가슴하고 엉덩이 맞으면 좋을 것 같대”라면서 몸매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빚을 갚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돈을 쓸 수는 없었기에 “빚을 다 갚으면 그 때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업주가 카운터 대기실로 불러 나갔더니, 대기실에는 ○○이모(주사이모)가 견적을 뽑는다더니 옷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업주는 화를 버럭 내면서 빨리 옷을 벗어 보라고 하여 무서운 마음에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모가 “견적이 2,000만 원 정도야”라면서 “너는 빚이 많으니, 1,50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업주는 “(다른 아가씨)애들한테는 1,500만원에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너는 싸게 해주는 거니까”라면서 얼굴, 시타구니, 엉덩이, 가슴에 보톡스 주사를 2번에 걸쳐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시술은 업소 방에서 약을 먹인 후 보톡스 주사를 맞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절대로 싫다고 거부를 하였지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후 선불금을 갚고 나서 500만원만 갚으면 제 빚이 청산이 되는 걸로 알았지만, 보톡스 시술 값으로 1,500만원이 더해져서 2,000만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 사례 2) 무속행위 강요로 인한 빚

손님이 없으니 점을 보자며 강요했고, 점쟁이를 업소로 불러 점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채 50만원에 부적을 사게 하였습니다. 이 돈도 빚으로 올렸습니다.

라. 질병 : 성매매로 인한 각종 질병

무리한 성교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장기간의 피임, 잦은 임신과 불법적 낙태 등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사례 1)

24시간 꼬박 손님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 해서 인지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월 말쯤부터 자궁 쪽이 아파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 의사가 자궁경부암 1기라고 하였습니다.

○ 사례 2)

병원에서는 내가 골반염증에다 자궁이 다 헐어서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못 펴고 걷는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면서 입원을 요구했지만 난 생활비와 선불금 때문에 입원할 처지가 못 되었다.

마. 정신적 피해 : 무기력감, 우울증, 자살충동, 복합외상후스트레스성 장애

빚의 굴레로 인한 무기력함, 정서적 학대, 우울증, 수치심, 도망 갈 경우 가족에 대한 위협에 대한 염려, 만성스트레스, 약물남용 등에 기인하며 성매매 굴레에 있는 동안에 겪는 외상후스트레스 척도는 베트남전 참전군인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들이 중첩되어 복합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치유회복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 동영상 촬영과 유포

그 남자는 저에게 “얼굴을 돌려라 다리를 의자에 걸쳐라 침대에 누울 때는 거울을 향해 누워서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며 이상한 자세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변태라고만 생각했지 카메라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되고... 차례로 더 올릴 거라며...

○ 자살충동과 우울증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우울증에 조울증까지 있다고 판정받았고 매일 불안한 마음을 떨굴 수가 없었고, 오늘은 뭐 때문에 억울한 욕을 먹을까?, 하루는 일어나는 게 두려워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이 매일 죽는 것 보다 싫어 혼자 벽보고 울고, 벽보고 중얼 거리는 ‘돌 아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산업 체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각종 착취와 폭력, 범죄로부터의 표적이 되어 하루하루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 성매매현장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각종 범죄가 발생되고 있는 사건의 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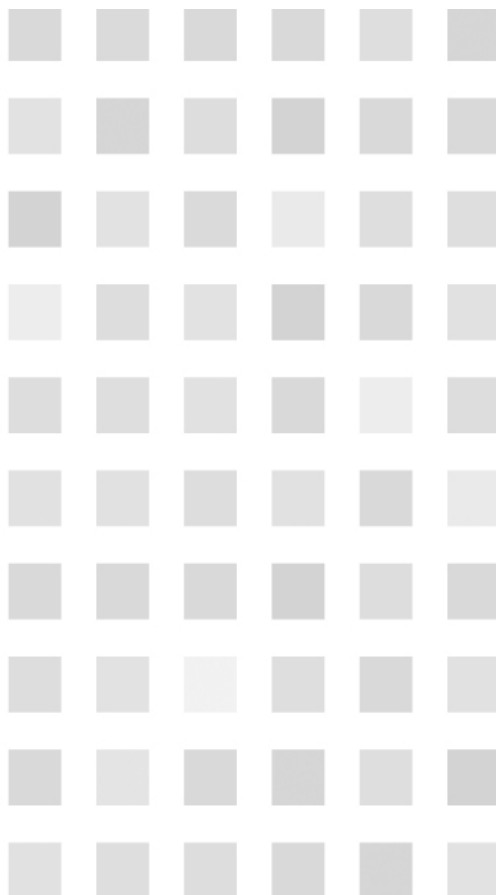
정부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 예방토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며 성매매방지법상의 처벌과 보호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시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매매 여성과 사회 불평등

정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 성매매 여성과 사회 불평등

정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 들어가며

최근 잔혹한 성폭력 범죄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전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경쟁 사회,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현상, 사회적 안전망, 복지의 부재와 같은 범죄 발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사후 처벌의 강화나 실효성 떨어지는 검문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바로 성폭력의 증가는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한 성매매 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성폭력 축소를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의 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한국 사회의 젠더 관련 논의 지형에서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 등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공연하게 반대하거나 정반대의 입장에서 대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양 극단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나 비범죄주의를 주장하는 여성주의 단체들의 주장은 전혀 다른 목적, 즉 성산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유지하고자 이를 주장하는 포주 집단 등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매매 축소 혹은 금지라는 실제 전선에서는 바리케이트의 저 편에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성매매와 성산업에 반대하는 진영들의 노력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남성 집단들이 자신들의 반대의 근거를 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소위 성노동자론자들의 이론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한국에서는 철저한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입각한 성매매 찬성론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관념적 목적을 최종적으로 상정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성산업과, 이들과 동맹하고 있는 남성 지배 카르텔의 성착취 구조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을 건드리지 않은 채, 오직 ‘현재’의 당장의 성매매 여성들의 문제인 양, 그리고 성매매 문제 자체 보다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려는 일부 합법화론자들의 ‘생존권’, ‘자발성’, ‘당사자주의’, ‘주체’ 등의 주장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주장이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주장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자발성과 당사자주의, 그리고 성노동자론의 전개 과정과 간략한 내용

성매매 문제는 오랫동안 서구 여성주의자들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젠더 관련 문제들 중에서도 논쟁이 격렬한 영역이었다(Pickup, 1998; Doezema, 1998; 2000; 2002; O'connell, 2002; Miller, 2004). 1980년대 이전까지 서구의 논쟁은 주로 ‘규제주의’와 ‘근절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논쟁은 이후 ‘강제성’ 대 ‘자발성’에 근거한 지리한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병을 확산시키는 자들이라는 전통적 인식에 반대하면서 성매매 여성들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성매매 근절을 주장하기 시작했다(Lerum, 1999: 10-11).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에 접근하고자 하는 보수적 사회개혁주의자들과 행보를 같이 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경찰력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관점은 더욱 악화되었다(Ibid. 1999: 12-3).

이후 성매매에 관한 자발성과 강제성에 대한 입장의 대립은 이후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양 진영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과 ‘성’에 관한 이론적 재구성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성매매를 자유로운 당사자들 간의 동의에 기반한 계약으로 규정, 성매매도 일종의 노동이며 직업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추구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는 노동의 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타의 억압적, 착취적 노동과의 차별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혀 다른 정의와 접근법을 가지고 있지만, 성매매를 축소 혹은 근절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서구 남성의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섹스관광, 아동과 여성에 대한 국제적 인신매매의 문제, 그리고 에이즈의 확산 등의 문제들로 인해 성매매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동시에 성매매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때부터 반성매매 여성운동은 생존권 문제와 더불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아닌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격렬한 대립을 시작했다(Doezema, 1999: 37).

이 시기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별하면서 ‘강제적인’ 성매매와 ‘자유로운’ 성매매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매매에 관한 성인의 자발적 개입을 부정하는 국제 법을 비판하고, 성매매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규정, 이를 존중할 것을 주장하는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다. 강제적 성매매는 분명 여성에 대한 폭력이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는 성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에 따른 행위로 판단,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추구하고, 노동의 틀 하에서 성매매를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Jeffreys, 1997).

198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구분법마저 지양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여성주의 진영이 형성되었는데, 이 같은 입장에서 있는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중시하면서 섹슈얼리티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를 주창한다.

그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역사적으로 여성과 성적 소수자 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해온 방식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면서 역사적으로 성을 규제해 온 법이 성에 따른 이중기준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다(Lerum, 1999: 17, Rubin, 1984; 1995; Vance, 1984).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성노동자 권리운동’은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할 것과 자유롭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Bell, 1994).

이들은 성매매를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적극적 성적 주체로 규정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친 성노동 여성주의자들 중 일부는 성 구매자와 알선 조직, 마피아, 그리고 경찰 등의 다양한 폭력으로부터의 위험을 강조하며 합법화(legalization)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성매매를 반대하는 진영이 추구하는 법과 경찰을 통한 국가의 규제(regulation)는 결국 남성 중심의 국가 권력을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을 가부장제의 나약한 희생자로 규정함으로써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전제들을 재확인하고 재강화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은 세계 곳곳의 남성 지배 엘리트들은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필두로 합법화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3 당사자주의, 노동자성, 자발성이라는 이름의 폭력

한국의 성매매 산업과 관련된 여러 특징들, 즉 중간 매개 구조, 성매매 카르텔, 그리고 법집행 단위의 의지 문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서구에서와 같은 논쟁은 성매매 특별법을 계기로 한국 성산업의 특수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었다. 이들은 성노동자 운동의 등장과 성매매 당사자들의 주체성(국경희, 2007; 김정은, 2008;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7; 이동주, 2008; 조은주, 2008), 성노동자론에 대한 소위 성매매 반대 진영과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고정갑희, 2004, 2005, 2007; 김경미, 2005; 김애령, 2008; 오김숙이, 2005; 이현재, 2009), 그리고 금지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문은미, 2005; 문현아, 2007; 이현재, 2007).

이러한 성노동자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고정갑희(2009)는 매춘이라는 반여성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매춘은 성노동의 일종이며 매춘노동을 억압하는 것은 매춘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매춘여성들을 피해자로 놓고 매춘을 근절시키려고 성특법을 제정하고 집창촌을 강제폐쇄하려는 것”이 “매춘노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또 다른 낙인과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서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매춘 성노동이 갖는 성적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설명하고자”하면서 “매춘을 노동으로 보려하지 않는 것은 성과 노동과 상품 사이에 위계화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매춘노동이 “육체노동을 동반되는 쾌락생산”이며, 성노동자는 “서비스노동을 통해 생산된 비물질 서비스 상품을 파는 것”, “구매자는 소비자로서 쾌락을 함께 생산한다”(123)고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이라는 현실의 행위자가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눈뜨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해결할 정신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4: 18).

다른 대표적 이론가인 문현아(2007)는 “‘매춘’을 둘러싼 행위가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매춘’을 금지하는 사회적 시선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일종의 ‘노동’ 혹은 ‘산업’인 성매매를 윤리적·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사회의 시선을 문제 삼을 것을 주장하면서 비범죄화를 성매매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과 착취의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일군의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자 운동’의 탄생과 ‘성노동’에 관한 논의들로 인해 성매매 여성에 대해 ‘문제적 여성’, ‘문제에 처한 여성’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능동적 주체’로서 여성의 행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성노동을 이론화했다고 자부한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노동자론을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얼핏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여성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행위는 여전히 조직 폭력 집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매우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성산업과 성매매로 이득을 보는 성매매 카르텔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 집단과의 역관계

속에서 기능할 수가 없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성노동자’들이 ‘범죄 집단’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그들과 ‘노동’ 관련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사실상 성폭력의 조건의 일부만을 완화하자는 결론에 불과한 매우 반인권적이고, 사변적인 주장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성산업과 성매매를 옹호하는 성매매 카르텔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성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남성들이라면 이에 대해 누구나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철저하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성매매와 관련된 착취 구조를 너무 모르고 있다. 특히 성매매에 있어서 여성들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소위 보도방 조직 등 중간 알선 매개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성매매 반대론자들이 의존하고 있다고 속단하는 국가와 법,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반해, 성 구매자들은 물론 성매매 산업에서 종사 여성들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중간 알선 매개 조직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는다¹⁾.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범죄자 집단과 자율적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등 성매매를 마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당사자들 간의 거래나 노동 혹은 서비스 산업’으로 상정하는 이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순진무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계급과 노동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의 사변적 의존, 국가와 법 제도, 경찰력에 대한 과도한 적대적 해석, 그리고 중간 알선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념적인 ‘당사자주의’와 ‘자발성’ 논의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성 구매자에 대해서도 거래의 단순한 한 쪽 당사자로 취급하다 보니 그 어떤 비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성매매 과정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성 구매자에 대해서 여타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 구매자와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성 구매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반면, 성매매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법에

1) 설사 이들에 의한 폭력과 착취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폭력이 더 크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고통을 언급하면 그 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동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포주나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어떤 직장보다도 더 잘 보호해 주는 존재’라고 묘사하는 등 성산업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해서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소위 ‘성노동론’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주의 진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매매와 성산업에 대한 이들의 단일한 관념론적 사고가 형성된 데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산업과 성매매 문제 본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었다는 데에서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문제제기가 안 되고, 성매매 산업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제한되어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매매 산업이라는 영역은 단순히 포주들과 조폭들만의 터전이 아니라, 이 사회의 (남성) 기득권 세력들의 침묵의 카르텔이 가장 강고한 영역이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문제는 사회의 한계적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매우 편리한 처리 방식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들과 강고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진 우리 사회의 각종 집단들은 포주와 조폭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착취 고리의 가장 밑으로 옹아매어 이익을 창출하게 해 주고, 그 대신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 받는다. 기업 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인, 각종 공무원, 교수, 정치인, 의사, 장교, 검찰 등등 직업을 막론하고 출세와 단순 유흥을 위해서 ‘성매매 카르텔’은 서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서로 접대하고 접대 받거나 여성을 성적 도구화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법을 집행해야 하는 단위가 불법 업소와 결탁해 있고, 성산업 출입을 접대네 뭐네 하며 관행처럼 여기고 즐기는 상황에서 법은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를 논하는 오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매매 업소에서의 성접대 문화, 유흥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남성들은 거의 없다. 특히 권력과 부가 몰려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성매매를 둘러싼 강고한 카르텔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이상적인 법도 그 법을 집행하는 단위가 이러한 카르텔의 한 부분이며, 성매매 업소를 쉽게 허가해 주는 상황에서 성매매 축소에 기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 해, 남성 중심적 국가 기구들에서 법집행을 담당해야 할 관료들 자신들이 성매매 문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탓에 결단코 성매매와 성산업의 근절이나 축소에 적극적일 수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가해지는 반성매매 진영과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박은 성매매와 성산업 축소에 관한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 반대를 무기력하게 하는 국가 관료 기구들 단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간 알선 매개체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산업과 성매매는 근절은커녕 축소도 어렵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성매매는 100% 가까이 남성이 구매하고 여성이 구매 당하는 일방적 형태가 주를 이루며, 여성이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권 침해 행위이자 폭력이다. 또한 성매매의 특성상 특정 연령대를 넘어서는 성매매 종사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제대로 된 노동과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인간 파괴 행위이다. 한때의 호기심, 일탈 혹은 가정 문제와 빈곤 등의 이유로 시작한 성매매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시기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 기술 등을 익히지 못 함으로 인해 평생 주 변화된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이다.

성매매 피해 시설 입소자 405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성매매 여성의 정신 건강 실태 및 지원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70% 이상이 무기력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면제(55%), 신경안정제(59%) 등의 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을 넘는다. 흡연율은 일반 여성의 20배 이상이었으며, 마약류나 환각제, 각성제 등을 복용한 경우도 21.5%에 달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매우 높아 이들 중 80%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 일반적 아동 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 조사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성매매 문제가 가족 문제,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으로 등록된 입소자가 11.5%에 이르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문제가 장애 문제의 방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유입은 자발적이나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이탈과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상당수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소위 '자발성의 함정'에 기반한 당사자주의는 현실을 외면한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각종 채무 등에 의한 반강제적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나가며

무엇보다 성매매 문제는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만의 당장의 생존권 등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소수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정만이 부재한 한국 사회 속에서 각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모든 계층 여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전 사회적인 인권 유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축소의 문제는 노동시장과 빈곤 문제 등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총체적인 여성 차별적 사회 구조의 타파와 같은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여성들의 고용 노동이 극도로 제한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저임금, 불완전 고용 여성 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직업으로서 성산업과 성매매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매매 축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이나 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 최고(36%), 사회 공공 부문 고용 최저(3.6%), 정규직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정규직 남성의 약 40%), 비정규직의 60%가 여성’ 등과 같은 현실은 여/남 노동 대중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게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각종 유흥업으로의 유입되어 비공식 영역에서 주변화된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 부문과 사회적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국가 보호가 전무한 자영업 비율의 축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주택의 공공성 확보, 각종 급여 제도의 현실화 등 보편적 복지 제도의 확립이 양성 평등은 물론 성매매 산업과 성매매 여성들이 줄어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 평등 지수 최고의 국가들인 북구 복지 국가들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단위가 천을 넘지 않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데에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성매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적절한 관계, 부패, 유착들이 맺어지는 성매매 업소의 폐쇄 없이는 어떠

한 서민 정책, 양성 평등, 복지 논의도 다 허상이다. 성매매 업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성매매 카르텔’의 추악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성매매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의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성매매 카르텔 구조의 힘은 거대하기 때문에 공급적 측면과 더불어 수요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성접대 문화의 일환, 산업형 성매매 업소 중심 성매매 등 한국식 성산업과 성매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노력으로 성매매 산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론 한국 성산업과 성매매 문제의 특징과 축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는 성교 중심의 성매매보다는 동아시아 기생 문화의 연장선상, 즉 여성을 철저하게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전 과정적으로 다양한 성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의 성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선호는 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성접대와 유흥 문화 속에서 성매매가 조직적이고, 대규모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성매매 거래 액수는 7조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 중 성매매 알선업체들을 통한 성매매 액수가 가장 많아 5조 4030억 원으로 전체 성매매 형태 중 81.6%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포함한 일반유흥주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액수가 3조 5729 억 원에 달해 전체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OECD 국가들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지하경제 구조 중에서 성산업도 그 상당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²⁾.

2) 현재 조세부담률 20.8%를 적용하면 연간 56조원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하 경제 자금 중에서 20%만 세금으로 전환해도 5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하경제 돈 중 탈세액이 제일 크고 선진국에 비해 지하경제 중 성산업 비중이 큰 한국에서 철저한 세금 집행은 여성 인권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산업과 성매매의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일상적인 형태, 그리고 유흥업소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조직들의 성접대 문화이다.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상장 기업 몇 백 단위 기업의 공식 접대비만 해도 한 해 6조 5천 억 원에 이르며, 그 중 유흥접대비가 절반을 차지한다(강준만, 2011; 6). 지금과 같은 성산업과 성매매 접대 문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다층적 착취 구조에 얽매이게 될 것이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 하는 수많은 북한의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성접대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도 성매매 산업 축소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히 한국에서의 성매매 문제는 ‘타락한 일부 남성 구매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부패와 인권 침해와 여성 착취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각종 성매매 업소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성매매 업소들이 불황에도 팽창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매우 이중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기업들, 성매매 업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고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우리의 국가 기구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업소라는 작은 공간에 여성들을 돈으로 가두어 놓으면서 그들을 성 시장에 공급하는 중간 알선 조직들을 포함,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 욕심을 채우는 남성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수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매매하는 전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이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 볼 측면이다. 즉, 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 혹은 보호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조직 폭력집단에서부터 서빙이나 소위 ‘삐끼’와 같은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주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산업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성산업과 연관된 불로소득자들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성산업에 자신들의 토대를 두고 있는 조직 폭력 집단들은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나 노점상, 철거민 탄압에 동원되는 용역 깡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거대한 규모로 주변화된 사회 집단들의 심각한 문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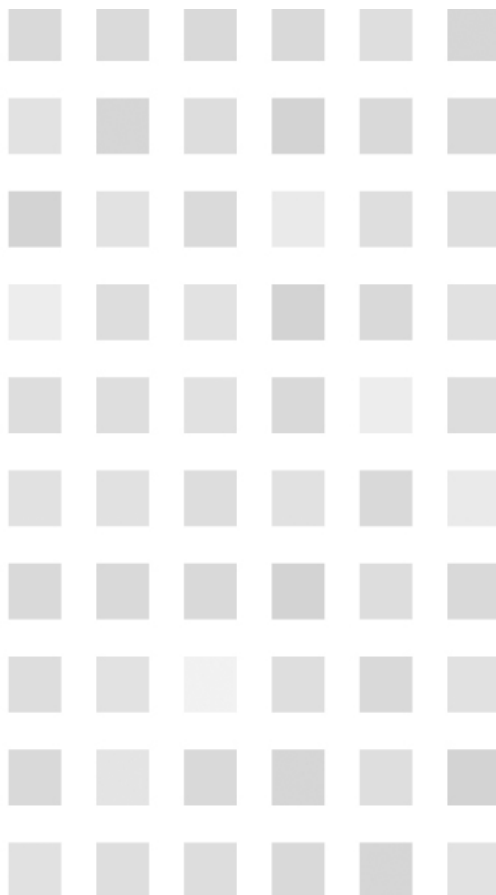
근원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매자로서의 남성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문제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측면, 즉 노동 시장에서의 저임금 하층 남성들의 문제로 접근할 때, 문제의 해결 지점을 찾아 낼 수 있다. 열악한 노동 조건 탓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비공식, 반범죄적 부문, 그 중에서도 성매매 산업과 관련한 영역에서 여성을 관리하는 범죄 조직의 일부가 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범죄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을 뿐이었다. 따라서 시각을 달리하여 장기적으로 복지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남성 룸펜 집단을 축소하는 것도 성매매를 축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정책의 해외동향

정미례 정책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 정책의 해외동향

3

- 전지구적 성착취에 대응하는 방안모색

정미례 정책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

들어가며

성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란 돈이나 재화를 주고받는 상업적 성행위를 하기 위해 사람의 인수나 준비, 동원, 은신처 제공, 운송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행위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성착취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¹⁾과 성차별적인 사회 불평등의 결과로, 유입과 모집, 이동, 성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착취라는 행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포괄한다. 단순히 성적행위가 발생하고 거래가 이뤄졌는가의 문제가 아닌 성매매를 유지하는 구조, 수요창출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성이 이용되거나 거래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²⁾.

성매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 제도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각국의 성매매관련 정책의 특성을 모두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본 글에

1) 가정의 폭력이 공공영역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연속체이고, 어린 시절의 성적학대나 폭력이 성매매 혹은 인신매매로 연결되는 과정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와 연구자료, 실태자료는 많이 있다.

2) 유엔은 인신매매의 약 80%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고 추산하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다. 2005년 미국 의회에서 발표된 '성 착취적 인신매매의 최종 수요 보고서(End Demand for Sex Trafficking Bill)'에 따르면 대략 60만 명에서 8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년 외국으로 인신매매 되고 있고 있으며, 그 중 80%가 여성과 소녀들이다. 이처럼 매년 수십만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거래를 위해 인신매매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서는 많이 알려진 대로 큰 구분에 의한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관점과 조치의 차이,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된 정의규정에 따른 법/제도, 정책 등이 서로 다양하고 상이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협약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각국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국의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상황에 맞는 모델과 현실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확인해 나가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과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볼 때 성인의 성매매행위에 처벌여부에 따라 금지주의, 규제주의, 비범죄주의로 크게 구분된다³⁾. 그러나 법과 제도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여 작동되기 보다는 법은 금지주의 입장이지만 정책은 오히려 성매매를 규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법으로는 비범죄주의이지만 정책적인 방향은 합법적 규제주의, 혹은 처벌하는 다른 형태의 법률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 등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는 성매매를 둘러싼 정책방향의 문제는 성매매발생, 실태 그리고 문제를 보는 지점, 사회문화 의식과 법률체계에 대한 시각과 입장 및 정책주도세력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초점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지구적 성착취 문제는 지역(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구조가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상황과 연결되어 그 뿌리가 깊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노동, 이주, 자발..)로 변화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또 다시 과거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적 규정력과 국가의 책임을 통해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에 대한 요청은 인신매매범죄자들이 각 국가가 제대로 된 법과 정책, 제도를 정비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법제도 정책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엄청난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성산업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3) 금지주의, 처벌주의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규제주의는 합법적 규제주의, 폐지주의는 비범죄주의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 법과 정책/제도의 딜레마로 인한 이중전략

가. 금지주의(prohibition) / 처벌주의(penalization)

금지주의(prohibition)는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입법정책으로서, 성매매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주의이다. 한국, 미국(네바다주 제외),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중국, 알바니아, 베트남 등이 금지주의를 채택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미국의 경우는 성매매행위(일반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와 구매하는 행위)모두를 금지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필리핀의 경우는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자체를 금지하지만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성적서비스 구매자 처벌법’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정책을 채택하면 성매매 행위자 쌍방은 모두 처벌된다. 금지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성매매불법화는 업주 및 알선자에 대한 성매매 여성의 의존성을 강화시켜 여성들이 업주에 의해 경제적·정신적 착취를 당하면서도 사회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한쪽으로는 성매매업소, 다른 한쪽으로는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성매매를 금지하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자활에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나. 합법적 규제주의(Regulation) / 합법화(Legalization)

합법적 규제주의(Regulation)는 관리주의로 구분되는데 좀 더 복잡하게 작동하지만 성매매를 법제도적으로 관리/규제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므로 흔히 합법화주의 라고도 한다.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으로 보고 이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 가진 합법적 규제주의의 경우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세금부과 및 등록증·의료감시체계의 의무화 등으로 성매매를 통제하고 있다. 즉, 합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이외의 것은 불법으로 처벌된다⁴⁾.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적보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의

지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타 직업처럼 영업환경의 개선이나 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착취를 덜 받고 일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국가의 강제적인 등록제도에서는 성매매를 ‘불법’과 ‘합법’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인 성매매 여성들의 법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폭력과 억압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하게 되는 비판적인 입장도 있다. 네덜란드⁵⁾,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 주, 멕시코, 캐나다⁶⁾, 오스트리아, 터키, 미국 네바다 주 등이 이러한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 폐지주의(Abolition) / 비범죄주의(de-criminalization)

폐지주의 관점⁷⁾은 규제 혹은 관리를 폐지하는데서 출발한다. 즉 성매매에 대한 각 국가들의 규제에 대한 철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입법정책으로서 성인들의 성매매를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용인하지만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입법태도를 말한다. 단, 성매매를 조장·착취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호주 퀸스랜드 주(州) 등이 이와 같은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성매매정책과 연결하면 비범죄화, 비범죄주의(de-criminalization)라고도 한다. 이러한 비범죄주의는 성매매의 원인을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업주들에게

4) 성매매행위를 당국이 지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용인하고, 의사의 감독을 받도록 하거나 공공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 집안에서만 허가하고 있기도 한다. 영국은 성매매 그 자체는 위법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광고행위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법 개정으로 합법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성매매 그 자체가 법률상의 처벌대상은 아니었으나 성매매를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성매매 여성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었다.

5) 2008년 뉴욕타임즈는 2000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암스테르담에서 일하는 8,000-11,000명에 이르는 성매매 여성들 중 75% 이상이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왔다는 보고서와 합법화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나 성매매업의 투명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고 암스테르담 시장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6)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각 시의 자격증법(municipallicensinglaws)에 성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등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어 거의 불법적으로 취급되는 국가로 분류된다. 특히 거리 성매매의 경우 단속을 통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7) 노예제도나 사형제도 폐지 등 법률·제도·관습 등의 폐지를 의미한다.

두고, 성매매행위자(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와 성을 구매하자)자에 대한 법적 처벌보다는 성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처벌이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성매매 여성들을 업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 신체적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사회적 소통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그 소득을 가족과 나누거나 두 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이 함께 생활하며 소득을 나누는 행위 모두를 “업주에 의한 착취행위”로 보고 있다.

비범죄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는 1949년 공창을 폐지하였고, 유엔협약 비준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1999년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던 법을 폐지했지만, 비범죄화가 곧 성매매를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0년 이후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근 성 구매자에 대한 억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영국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는 스웨덴 법에 영향을 받아 거리에서 성을 구입하려는 행위(Kerb-crawl)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제정되었고, 노르웨이는 성 구매 행위 처벌을 위해 법안을 제정하기도 하였다.⁸⁾ 아이슬란드, 인도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으며 스페인에서 성매매는 비범죄화이지만 바르셀로나시에서는 2006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매매자체에 대한 비범죄화로 선회하는 국가들도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 for Ontario)은 2012년 3월 26일 논쟁이 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성매매업소 운영과 알선(the operation of bawdy-houses and procuring)을 불법화한 캐나다 형법(the Criminal Code of Canada)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길거리로 내몰아서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위헌신청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매매 목적의 호객행위(soliciting for the purposes of prostitution)는 여전히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2012년 4월 25일부로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항소된 상태이다.

8) 그 외 관련 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해외소식 자료 참조.

특히 대만의 경우 1997년 이후 강력한 성산업 억제 정책이 관철되면서 공창 폐지가 진행되었으나 성매매·성노동 합법화에 대한 논쟁 끝에 중앙정부가 사회질서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정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도록 허용되었다⁹⁾.

3 성매매에 대응하는 각국의 전략

가.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와 국제적인 대응¹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2년 여성인신매매와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 무력충돌 그리고 폭력사이의 상호연결성을 집중 조명하는 일반권고안 19조를 채택하면서 인신매매가 젠더에 근거한 폭력의 한 형태임을 명시하였고, 1989년 아동인권협약에서는 포르노그래피 같은 다른 형태의 성착취도 덧붙여진다. 이같이 국제사회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관련 수많은 문서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수요를 창출하는 범죄자들은 우편주문 신부산업이나 섹스관광, 안마와

9) 대만 성매매특구 허용... 특구밖에선 엄벌...

성매수자 처벌조항 신설(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매매특구 설치가 허용됐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질서유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선 성 매수자와 매춘 행위자, 알선자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구 밖에서 성 매수를 할 경우 최고 3만 대만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구 외 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3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거나 최고 5만 대만달러(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 매수자는 처벌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대만의 헌법재판소 격인 사법원 대법관회의가 2009년 이런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관회의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헌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자체가 앞장서 성매매특구를 설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원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시·현이 특구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 정부가 민감한 사안의 판단을 지방에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특구가 설치되면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tjdan@yna.co.kr

10) 이 부분은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2010년)때 본인의 줄고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음 밝힌다.

마사지, 위장된 국제결혼과 같은 형태로 여성과 아동을 인신매매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냈다.

또한 각국 정부 역시 의정서나 협약에는 가입을 하더라도 국내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입법들이 서로 모순되도록 방치하기도 한다.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2000년 유엔 ‘국제조직원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예방 및 억제·처벌에 관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의정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겨냥한 것은 ‘타인을 성매매함으로써 생기는 착취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성착취’로 인신매매범죄의 정의와 국가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¹¹⁾. 이 의정서는 사실상 유엔협약 최초로 인신매매를 촉진하는 수요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9조 5항은 입법을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거나 강화하여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신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를 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 2005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수요에 대한 결의안에서 ‘성착취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수요차단은 인신매매방지의 핵심요소’로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착취자들을 저지하고 수요를 차단하는 모든 조치들-입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을 각국정부에 촉구하고 있다¹²⁾.

이런 조치에 의해 2006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특별 보고관인 시그마후다 보고서, 특히 상업적인 성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권과 젠더관점의 통합에 의하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성매매는 대부분 인신매매 요건을 충족시킨다, 성매매 산업이 합법화된 협약당사국

11) 구체적인 내용은 제3조 (용어의 사용)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납치·사기·기망·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점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종속 또는 장기의 절제를 포함한다. 위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위에 규정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는 이러한 행위가 위에 규정된 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제5조 (범죄화) 각국은 제3조에 규정된 행위가 고의로 행해진 경우, 자국의 국내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한다.

12) 모니카 오코너, 그리인힐리, 2006,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관계에 관한 보고서 중에서 인용

들은 합법화된 성매매조직들이 체계적인 인신매매를 쉽게 영속화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 전역의 데이터들을 볼 때 성매매를 합법화 한 협약당사국들은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또한 상업적 성착취 수요와 인신매매간의 상관관계에서 성매매에 개입되는 경로나 성매매 현장에서 권력의 남용과 성별, 인종, 민족, 빈곤 등 지위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를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각종형태의 착취행위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수요에 의해 조장된 착취행위가 인신매매행위로 이어진다는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며, 수요차단을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하지 말 것과 본국송환과 같은 제제도 받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와 인신매매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성별화 된 성산업구조의 특징은 성과 몸의 상품화로 여성들을 전지구적 성착취의 희생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적인 합치의 최소기준은 인신매매와 착취의 정의규정에 따라 대응하는 것, 성매매는 아동의 경우에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문제등에 대한 조치 강화마련 정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의규정을 비롯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과 기준이 작동되어 전지구적인 성착취현황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나. 수요차단 정책 - 성 구매자에 대한 접근

전통적으로 성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성을 파는 행위자(대부분이 여성)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이후 성 구매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이는 금지주의 국가뿐 아니라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남성 구매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교육"이 중요

13) 2006년 유엔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이렇게 말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은……[자국들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를 영속화시키지 않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듯이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국가들은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99년 스웨덴에서는 성적 서비스를 구매하는 남성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거리에서 성을 구입하려는 행위(Kerb-crawl)에 대한 처벌법이 만들어 졌다. 캐나다에서는 거리 성매매(street prostitution)와 성매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 성매매 여성¹⁴⁾에 대한 접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는 국가별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 금지주의 나라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치중하는 반면, 비범죄주의 국가와 합법적 규제주의 국가들은 성노동자의 위치에 있거나 성판매자로 보고 당연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복지 서비스 및 성보건 관련 정책에 좀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 성산업에 대응하는 각각의 프레임

성매매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학자들에서는 성매매를 보는 관점, 프레임을 중요하게 보고 성매매를 보는 다양한 행위자의 프레임이 시민사회의 공공논쟁과 입법기관의 정책논쟁을 거쳐 각 행위자의 프레임이 법에 반영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도 한다¹⁵⁾.

14)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다. 여성이 팔리는 상품일 경우 파는 행위자는 알선업주일수도 있고, 제3자의 매개 없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도 있을 것이므로 다양하게 구성될수 있지만 본 글에서는 성을 파는 행위로 표현하고 대부분의 여성을 지칭한다. 알선, 유인등 제 3자의 행위는 다른 용어로 사용할 것이고 성판매자라는 용어는 인용문구를 사용할 경우 원문에 있는 표기를 사용함을 밝힌다.

15) 유숙란, 오재림, 안재희(2007),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 도덕프레임 (moral frame) | 젠더프레임 (gender frame) | 자유주의프레임 (liberal frame) | 反차별프레임 (anti-discrimination frame) | 성노동프레임 (sex work frame) |
|---|---|---|---|---|
| 성매매는 부도덕한 행위, 윤락행위, 사회기강에 해악 | 성매매는 여성인권 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불균등 권력관계, 전체 여성의 문제 |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개인의 문제 | 성매매는 정상직업, 성매매자의 차별이 문제 | 성노동 등 성서비스의 제공은 성노동으로 간주, 정식 직업 |
| | 성매매 자체를 근절해야 하지만,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므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 성매매를 상업화된 사회속에서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보아, 범죄로 처벌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 성매매는 정상적인 직업이며, 성매매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법적 차별이 제거되어야 한다 | 성매매자의 성서비스의 제공을 성노동으로 보고 노동자의 권리로 접근 |
| 당사자 모두 처벌 - 금지주의 | 알선업자 처벌강화 성적서비스 구매자를 중심으로 처벌 |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여 국가의 개입을 반대 | 성매매자의 지위 혹은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 | |

- 유숙란, 오재림, 안재희.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2007) 의 내용을 재구성함

성산업 합법화 국가로 알려진 호주는 연방국가로 자치영역별(Territory)로 성산업에 대한 규제나 법안이 다르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거나 비범죄화되어 있다¹⁶⁾.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제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 자치구가 아닌 연방법이 작동된다.

호주에서 성매매는 지역에 따라 합법이며(호주 수도 특별 지역, 노던 테리토리주, 퀸스랜드 주, 빅토리아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비범죄화 된(뉴 사우스 웨일즈 주), 또는 불법화된(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태즈메이니아를 제외하고는,

16) “8개의 주와 자치령 중 6곳이 성매매법을 채택하여 성매매를 하나의 합법적 상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직장 보건 및 안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주와 자치령은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빅토리아, 태즈메이니아, 호주 수도자치령, 북자치령이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 및 길거리 성매매는 불법이다.”, 메리 루실 설리반(Mary Lucille Sullivan), <성매매합법화의 진실: 호주 성매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 인권』, 2011년 하반기

개인적인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성매매 업소는 불법화되어 있다. 이를 도표화해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호주 지역의 성산업 규제 현황 】

| 자치구/영역 (Territory) | 성매매업소 | 에스코트 | 개인 성매매 | 거리 성매매 | 마사지업소 |
|---|------------------------------------|-----------------------------|----------------------------|----------------------------------|-----------|
| 뉴사우스 웨일즈 (New South Wales) | 18세 이상, 합법 | 개인, 에이전시 합법 | 합법 | 교회, 학교, 주택, 병원, 차 안을 제외한 호객행위 합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 빅토리아 (Victoria) | 18세 이상, 허가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 | 허가된 에이전시 합법 | 출장 서비스만 가능 | 불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 퀸즐랜드 (Queensland) | 18세 이상, 허가된 성매매 업소 합법 | 개인 단독 에스코트 합법, 에이전시 불법 | 개인 단독 성매매는 합법, 2명이상일 경우 불법 | 불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 서호주 (Western Australia) | 성매매 업소의 운영은 불법 | 개인 에스코트, 출장 서비스 허용, 에이전시 불법 | 개인 단독 성매매 가능 | 불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 남호주 (Southern Australia) | 불법 | 관련 법규 없음 | 불법(호텔 객실 제외) | 불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 태즈메이니아 (Tasmania) | 불법 | 최고 2명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운영 허용 | 최고 2명까지 개인 성매매 허용 | 불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 호주수도 자치령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18세 이상, 규정된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 | 규정 지역 내의 에스코트 서비스 합법 | | | |
| 북자치령 (Northern Territory) | 불법(호텔 제외) | 허가된 에이전시 합법 | 개인 단독 에스코트 합법 | 불법 | 성매매업소로 간주 |

호주는 인신매매와 성산업을 철저히 구분한다. 성매매에 대한 주마다 다른 수십 가지의 규제는 성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그중에서도 성병검진 등 여성들의 신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성노동자 단체에서 표방하는 것처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호주의 법은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호주 형사법상 강제 노동에는 성적 서비스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성적 노예상태의 정의는 오직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인간의 행동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관계가 있다 - 인간은 다수의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거나, 만일 그녀가 성적 서비스의 제공의 중단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나 그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나 지역에서 벗어나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녀는 아마도 (다른 상황을 맞부딪힌다면) 성적 노예상태에 있을 것이다- 호주의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례 중 78%가 '성적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서 성산업의 허용과 성적 인신매매가 어떻게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¹⁷⁾.

4 한국의 현실 : 몇 가지 사례

사례 1)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 유입 경로 및 피해

- E-6 비자 : 2009년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2,500여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연예인비자라고 불리는 E-6비자를 필리핀 현지 기획사를 통해 발급받고 입국하는데 한국 기획사에 인계되고, 한국 기획사에서는 외국인전용클럽에 여성을 보냄.
- 성매매피해 :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외국인전용클럽 등으로 이동, 외국인전용

17) 캐롤라인 노마의 논문을 참고.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Caroline Norma, 『여성과 인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년 상반기

클럽에 보내진 여성들은 입국하면서 체결한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가수 공연은 거의 하지 않고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외부로 2차 성매매를 나감.

- ‘바파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음. 한국에서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은 외국인전용클럽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생활(현재 수도권 경기일대, 군산, 부산 및 거제 등

사례 2) 일본으로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된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으로 건너가 성매매를 한 탈북 여성들을 무더기로 검거, 성매매 여성과 브로커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주 탁 씨를 국내로 데려와 조사할 예정이다.

22살 박 모 씨 등 탈북 여성 13명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해왔다. 박 씨 등은 국내에 들어온 지 3~4년이 됐지만 취직이 잘 되지 않자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넘어가 3개월짜리 여행비자로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유사 성행위를 해 모두 11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성매매 업주인 탁모씨(49)와 브로커 이모씨(44) 등 2명도 모두 탈북자 출신으로, 국내 탈북자 인맥을 통해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2010,10,22)

사례3) 해외로 송출되는 경우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성산업에 유입되었던 여성들을 해외 업소로 알선업체들이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빛 문제)

- 합법적인 절차 그러나 실상은? 취업사이트, 워홀이나 학생비자를 통한 피해 : 인터넷 취업광고나 사이트를 통해 여성들을 모집하여 해외로 인신매매하는

경우, 합법화 국가에서 성매매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면서 송출되는 경우 등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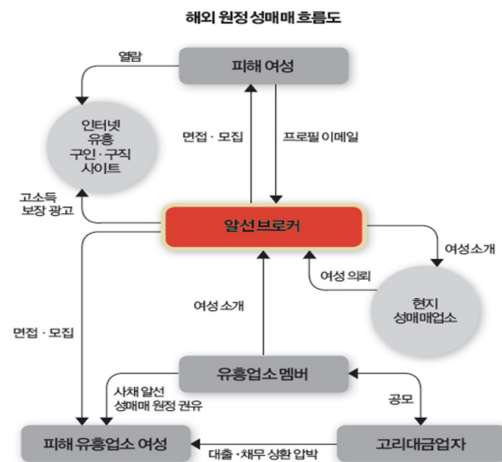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1년 정도 있다가 세컨 비자로 학생 비자를 발급 받는데, 에이전트가 아는 학교가 있어요. 수업을 아예 안 하거나 거의 안 해도 되는 학교. 유학업체 중에서도 에이전트랑 연결돼서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호주에서 여성인터뷰 내용)

5 나가며 : 각국의 성매매정책의 시사점 및 우리의 과제

성매매의 현실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의 요소들을 충족시킨다”라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간 명료한 연계고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할 때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성매매/ 성착취의 고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세계화 과정과 더불어 증가하는 국제적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는 각국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정부관련 기관의 능력 개발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적 성매매 관련 정보 수집과 법률

18) 해외 원정성매매라는 용어의 문제: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해외로 송출되는 여성들이 해외로 원정 가서 성매매를 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닌 ‘해외성산업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용어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연구를 시작으로 정부담당자들의 특별교육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국가간 네트워크 형성(다자간 협의)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위기지원과 사회복귀 지원,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상담, 안전한 귀국, 인신매매 위험에 취약한 대상에게 인신매매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성매매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특징은 첫째, 국제적 협력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인신매매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의 빈곤화와 이주여성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둘째,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정부기관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공동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적 성매매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개발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827년 “성매매를 폐지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아무 여성이나 공격할 것”이라고 한 나폴레옹의 말은 “남성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은 이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자유시장에서 여성의 몸을 소비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 GDP 4.1%)임에도 불구하고¹⁹⁾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고 확대시켜 온 결과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성의 상품화를 가속화 시킨 촉매제로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방치하게 된 상황을 초래한다. 성매매인정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재로 작동되는데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차별, 빈곤 및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경제적인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합리화 하는 전략이 그 근거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매매는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임을 동시

19) 여성가족부의 <2010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성매매 추정치는 최근 1년간 유사성교행위 구매 남성은 35%, 최근 1년간 성교행위 구매 남성은 38%로 여전히 높고, 유형별 성매매 건수는 집결지 연간 820만 건, 겸업형 연간 3,516만 건, 변종 39만 건, 온라인 21만 건, 해외 성 구매 60만 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매매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성매매는 성적착취라는 합의가 있었지만²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합법화하면서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는 분화의 촉진으로 성산업을 경제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다른 직업과 같이 규제하고 세금을 부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결국 자유방임 시장중심의 자본의 논리에 국가정책이 굴복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물론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정책을 가진 국가의 경우도 형태만 다르지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다. 신변중 형태의 업종의 진화와 안마, 오락, 휴게시설등의 명목으로 규제가 해제된 곳을 자유업종의 형태로 열어놓게 됨으로써 산업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성산업의 사업가와 성 구매자들을 개인화하면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전형을 유지시킨다. 성매매와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는 오로지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필요로 하는 시장을 겨냥한 사업가와 성적서비스라는 영역을 통해 자신의 성적욕구를 교환이라는 명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남성 구매자들에 의해 존재하는데 성매매의 존재이유, 국제화된 성산업의 성장과 방향, 원동력을 조정하는 것은 구매자와 자본가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다²¹⁾는 관점은 성산업구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성산업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은 성매매와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여성, 아동피해자들을 지원, 비범죄화하고 이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가지 통합적인 개입을 제시한다²²⁾. 그러

20)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협약(1949년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개인과 가족, 한 사회의 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명시한다.

21) 진엔리케즈(2012), 지구화된 성매매시장과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 p12, 여성과 인권(2012년 상반기) 통권 제 7호

2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에 대해 협약 제 6조는 성매매자체의 불법화 또는 합법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고, 성매매로 인한 착

나 각 국가마다 법을 운영하는 방식과 규제내용을 서로 다르다. 실제로 성산업을 영업행위로 인정하고 합법화하면서 노동의 영역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성산업을 일정 정도 규모와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행정적인 영역에서 취급하는 방식도 있고, 한국과 같이 성매매를 금지하면서 성매매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식 등 서로 다른 법과 제도 정책방향이 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의 몸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자와 그런 사업을 처벌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구매자들에 대한 법을 통한 방식과 제도적 규율방안 등은 서로 다르다. 스웨덴처럼 성매매업소는 물론 성 구매자까지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²³⁾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를 허가제로 하여 합법화하는 국가나 성매매자체를 범죄로 다루지 않는 국가도 있다. 스웨덴의 ‘성 구매자 처벌법’은 일차적으로 구매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 범죄로 객관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어느 제도를 채택하든지 성매매업소와 중간업자 등 착취자는 처벌하고 성 구매의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성문화를 개선하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²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취 (exploitation of prostitution)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규약을 해석하는 문화적 배경과 법제도의 상황에 따라 성매매 자체에 대한 각국의 제도는 다양하다. 인신매매 문제는 21세에 들어와서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여 별도의 국제조약이 2000년 12월 1에 제정되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예방 억제 처벌 의정서’가 그것이다.

제3조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무력사용, 위협 또는 각종 강압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악용 또는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행위 등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 앞서 나열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고의적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23) 1998년 스웨덴의 여성에 대한 남성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은 (중략) 성적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략) 그것이 상대여성에게 파괴적인 행동임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기술함으로써 성 구매자는 성매매 된 사람의 열악한 상황 또는 학대받는 상황을 이용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여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대상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실제로 성매매와 성적폭력을 정상화하는 문화와 연관이 있으며 성매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국적 인신매매가 증가한다고 한다.(인용 및 재인용 : 맥스웰트먼 (2012), 성 구매 금지와 인신매매척결, 여성과인권 통권 제7권,p111-118,한국여성인권진흥원)

24) 성매매된 사람은 알선매개자 포주 및 구매자 모두에 의해 착취당한 약한 상대방이지 공모자가 아니므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는 성매매에 대응하는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더 많은 논의는 본

우리의 상황은 성산업의 확장 속에 성매매업소가 일상적으로 영업하며 여성의 몸을 성적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면서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법집행력은 한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현실이다.²⁵⁾ 성산업 축소는 커녕 확장되는 현실에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약하고 오히려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하고 법적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현실은 예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시대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성산업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는 여전히 성매매를 자발과 강제로 나누는 구분선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가해자와 착취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업소폐쇄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 없이 성산업확장과 성산업착취구조의 교묘함에 대응할 수 없다. 신, 변종이라는 이름으로 성산업 규모가 나날이 팽창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수요창출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이 부분을 차단해 나가는 법적정비가 필요하다.

- 성산업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용어를 재정비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예방대책이다.
-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모색은 성산업구조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 국제적인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정비 :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인의 성매매 여성비범죄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문(2010)참조).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의 전략은 성매매된 사람들(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험없이 그 상황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성매매가 여성억압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응방식이 보다 구체화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25) 성산업축소를 위해서는 성매매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폐쇄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된 단속과 업주에 대한 처벌로 인해 그 규모가 축소되어 왔지만, 집결지역 전체의 실질적인 폐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른 행정규제는 식품, 접객 풍속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해 놓은 업소(다방의 경우 일반음식점)를 점검하는데 그쳤고, 주택, 소방, 전기등도 업주개인의 관리책임으로만 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성매매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성매매영업, 알선, 장소 제공 등이 일어나는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들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명의만 바꾸거나 간판만 바꿔 계속 영업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201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E-6 예술흥행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저개발국 여성들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한 후 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하면서 성매매나 노역을 강요당했다. 한국 여성들은 국내에서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상당수는 선불금에 묶여 알선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도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다자간,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적극적 대응 : 각국 정부와 민간ngo와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장기적 대안마련

참고 제7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 (성매매 및 인신매매) 권고사항

- ▲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률 검토
-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 제정 및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및 처벌에 관한 의정서」 비준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부처별 향후 계획 중

〈법무부의 답변〉

- (인신매매 관련 포괄적 법률 채택 및 관련 법률 개정)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 추진(1.10 국회 제출)
- (인신매매 범죄 대처 방안 모색) 인신매매 범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1.12)

* 법무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참여

- (인신매매방지외정서 비준)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외정서 비준은 외교부(조약과)에서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외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으로 형법 개정 추진 중('1.10 국회 제출)
- (E-6 비자 입국여성 채용 업소에 대한 감시) 초청자에 대한 온라인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 구축('1.11)
 - * 성매매 강요 등 전력 공연기획사 등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기준 마련('11.8)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성인 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성매매에 있어서 여성만을 비범죄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 * 현재 청소년·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피해자 등은 처벌하지 않음

■ 참고 및 인용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성산업실태조사 자료집
서울대여성연구소(2011), 성매매실태조사 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 국제심포 자료집
맥스웰트먼(2012), '성 구매 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여성과인권 통권 제7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012), 성매매방지법시행8주년 토론회 자료집 외

그간 성매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대안 모색

원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원)

4 그간 성매매 정책의 성과 및 향후 대안 모색

원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원,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

아무도 쉽게 알 수 없다. 경험한 자와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 외에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행동한다.

가정의 균열에 따른 갈등으로 10대 후반에 가출한 여성이 있다. 티켓다방을 거쳐 유흥업소로 가게 되었다. 업주들은 일정기간 마다 여성을 이동시켰고 그 때마다 선불금 채무가 늘어났다. 채무가 늘어나자 업소 주인이 선불금을 관리할 소개업자를 소개했다. 소개업자를 거쳐 다시 유흥업소를 소개받았다. 무리한 음주에 따른 위장 질환과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삽입성교에 의한 자궁질환이 생겼다. 줄지 않는 선불금 채무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소개업자가 소개한 유흥업소에 들어가 지 못했다. 소개업자는 가족 및 친인척들에게 여성의 성매매업소 생활 사실을 알리고 채무변제를 강요했다. 2005년 3월 소개업자가 선불금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상담소를 통한 상담을 거쳐 법률지원을 받아 불기소처분(무혐의결정)이 확정되었다. 탈성매매 후 직업훈련 과정을 거쳐 가진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다. 성매매업소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의 만류 및 본인 판단에 따라 결혼하지 않길 결심했다. 성매매 트라우마로 불안증과 불면증 지속이 지속되었다. 2012년 동일한 소개업자가 대여금(선불금) 청구소송 제기하였다. 성매매 여성상담소와 연락되어 상담 및 법률지원을 다시 받게 되었다¹⁾.

1) 이 여성은 법률지원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 여성들처럼 착하고 따뜻하지만, 영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7년 만에 대여금 소장을 앞에 두고 다시 만났을 때, 이 여성은 성매매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겪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서기 위하여 남들보다 2배 분량의 일을 하느라 많이 아워어 있었다. 한층 깊어진 눈과 다부진 말투, 적지 않은 통장 잔고는 7년간의 사투 끝에 얻어진 것이었다.

위 사례 속 여성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여성이 탈성매매 후 직면한 상황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우리 성매매방지법²⁾ 아래에서 탈성매매 과정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부딪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 여성이 탈성매매 과정에서 받은 지원과 직면한 상황은 우리 성매매 정책의 성과이자 한계라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간 성매매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지난 8년간 성매매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가. 기존의 성매매 정책 검토³⁾

정부는 성매매특별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국민의식의 전환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서비스를 확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개념이 도입되었고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지원시설⁴⁾,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의 인프라가 확충 되고, 이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긴급구조, 상담, 의료·법률지원, 심리치료, 진학, 취업지원, 일자리 제공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되고 있으며, 성매매집결지가 크게 축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매특별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로 성매매를 양산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범죄수익 몰수, 추징 등이 확대되었고,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업소(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이 강화⁵⁾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본 글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매매처벌법’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으로 약칭하고, 위 두 법을 총칭하여 ‘성매매방지법’이라 하겠다.

3) 성매매방지법 시행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강월규(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토론문 ‘그간의 성매매방지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관 : 국회의원 남인순,

4) ▶ 피해자지원시설 '04년 61개소→'11년 88개소

▶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 실적: 17,402건('04년)→36,755건('11년)

5) ▶ 성매매사범 총 291,452명 검거, 그 중 업주·관련자 40,019명(13.7%)('04~'11)

나. 기존 성매매 정책에 대한 평가

그러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현장단체들이 경험하는 성매매현장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 성산업과 성 구매자의 광범위함은 정부의 위와 같은 평가처럼 기존 성매매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워 보인다.

즉, 여성가족부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한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⁶⁾ 보고서에는 45개 지역에 산재한 성매매 밀집 지역과 3만 5천 곳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알선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 등이 담겨 있는데, 서울 강남 지역 역삼·삼성·논현·대치 4개 지역의 성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는 총 1445곳이나 되었다.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94%), 이용업(87.5%), 노래방(81.8%), 마사지업(73.9%) 등은 이른바 ‘도우미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접객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강남역·역삼역 등 주변에는 수 만장에 달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전단이 깔리는데, 경찰은 업소를 최소 수백 곳에서 많게는 수천 곳까지 추정할 뿐 구체적인 수와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 남성의 성 구매를 대규모 조사로 분석해 체계화한 최초 보고서인 <2010년 성매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년 동안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이 성매수를 했고, 1명이 1년 평균 2.6번에 31만 3천 원 지출했으며, 대학원 이상 학력자가 고졸 이하보다 1.74배 경험이 많았고, 성 구매 하는 친구가 있으면 3.7배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⁷⁾.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점업형(룸살롱 등 유흥주점), 전업형(성매매 집결지), 변종형(안마시술소·마사지업소 등) 등이 있는데, 위 보고서는 ‘성 구매 남성 심층면접’을 통해 “면접 대상 남성들의 경험에서

- ▶ 성매매처벌법 위반 풍속업소 단속 11,010건('08~'11)
- ▶ 성매매사범 범죄수익금 1,003억원 환수('08~'11)
- ▶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유흥주점 영업자 등에 대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1.8.)

6)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실태조사], 2010, 서울대 여성연구소 작성

7) 한겨레 21, 2011. 11. 29. 888호

두드러진 행태적 특성은 대부분 남성들이 혼자보다는 다른 남성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과 경로를 통해 성매매를 하러 간다. 혼자서는 성 구매를 해본 적이 전혀 없거나 한 번뿐이라고 말하며 개인적인 출입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이 심층면접 대상자 18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성 구매 행위가 남성들 간의 집단성과 동성사회성을 발현하고 확인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성 구매 남성들이 개인적인 출입을 선호하지 않으며 집단적으로 성 구매를 한다는 분석은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위 조사보고서에서는 많은 경우 성 구매 행위가 마치 의례 혹은 관행처럼 동성집단과의 어울림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은 성 구매가 남성 집단문화, 동성사회적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임을 말해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성 구매남성에 대한 가장 최근 조사는 2006년에 진행되었는데 미국 남성은 1년 동안 4%의 성매수 경험이 있고, 평생 동안의 성매수 경험은 15~18%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10분의 1 규모로,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오스트레일리아(16%)나 네덜란드(16%)도 수치가 우리나라의 절반을 밑돌았고, 영국과 뉴질랜드는 7%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비교가 가능한 곳은 짐바브웨 정도로, 53%였는데, 위 보고서는 성매수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청소년기 교육만이 양성평등 인식을 길러줄 수 있다. 징벌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⁸⁾. 이 모든 자료들에 의하여 거듭 주장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 중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사회내 성매매시장 규모의 거대화화 와 성매매알선업체의 광범위함으로⁹⁾, 성매매정책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게 해 준다.

8) 위 기사 참조

9) 성매매의 유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 형사정책 연구 실태조사’, 2002, p21.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고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발표문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본 성산업착취구조와 성매매 여성인권의 실태’

2 ‘피해자도그마’에서 ‘실질적 여성인권 보호’ 정책으로의 전환

가. 잘못 정의된 ‘피해자 도그마’에 발목 잡힌 성매매 정책의 태생적 한계

성매매처벌법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에 한하여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인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이 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됨과 동시에 성매매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관계에 놓이게 된다.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공간에서 당하는 인권침해를 성매매알선자, 성 구매자와 공범관계에 놓고 있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구조는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공간에서 겪게 되는 피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속시키는 한편 책임주체를 혼돈시키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8년간 성매매정책 중 한 축을 담당했던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통해 성산업과 성 구매를 축소하려는 정책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 및 성매매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정과정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인격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고 성 구매자의 권력에 여성을 종속시키는 행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행위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로 인해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성착취 피해자’가 된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¹⁰⁾.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두 가지 형태의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남성 구매자와 포주, 인신매매범, 행인에 의한 강간, 폭행, 살해와 같이 보수가 없는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성기 삽입에 따라 보수를 받는 폭력이다. 성매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들도 심각한 해를 끼

10)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의 관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탈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미례,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2010, 43쪽에서 인용

치며 대부분 폭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성매매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과 마음이 지속적으로 분리되는 데서 오는 문제와 성매매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비인간화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서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을 경험하게 된다¹¹⁾’는 점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적 논리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간과하고, 성매매 여성의 피해를 존속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성에게 다른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로 이분화하여 고찰할 수 없는 것이며, 성매매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여성의 몸과 정신에 대한 명백한 폭력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와 성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나아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주의적인 성의식의 변화를 위한 담론형성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¹²⁾.

‘성매매실태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산업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어 있는 현실에서 자본과 성산업 시장은 여성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신에 성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욕망을 생산하고 여성을 성산업 구조로 몰아 낸다¹³⁾.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산업 규모와 성 구매자의 숫자는 전세계 어느 국가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팽창되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작업은 지난하나,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 대학교육에서 여성학, 성평등, 인권교육의 강제화, 효과적인 사회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여자’를 권하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직시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폭력과 매매는 상

11) 쉘라 제프리(2012) 2012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한인여성 피해 실태와 대응전략 모색’ 기초연설문 ‘성매매와 인신매매, 그리고 여성인권’ 13쪽에서 인용

12) 정미례의 위 논문 44쪽에서 인용

13) 정미례의 위 논문 73쪽에서 인용

관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¹⁴⁾. <2010년 성매수 실태조사 보고서>와 같이, 우리나라 성 구매자들이 대부분 단독적이기보다 집단적으로, 동성문화적으로 성 구매에 나선다는 결과는 바로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인식변화 및 문화의 변화를 통해 성매매 수요 감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공간에서 당하는 폭력성을 분명히 밝혀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알선자와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한편, 성평등,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매매수요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성매매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3 성매매정책의 변화와 발맞춘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초기에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실제로 보호처분이 우선되면서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운용상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효과를 발휘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에서 강제성 여부로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고, 성매매공간에서 당하는 다양한 성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은 범죄자로 처벌받고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는 여성의 뒤로 숨어버리는 일이 증가하게 되었고, 성매매처벌법은 더 이상 성매매 여성의 보호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성매매알선자 및 구매자 처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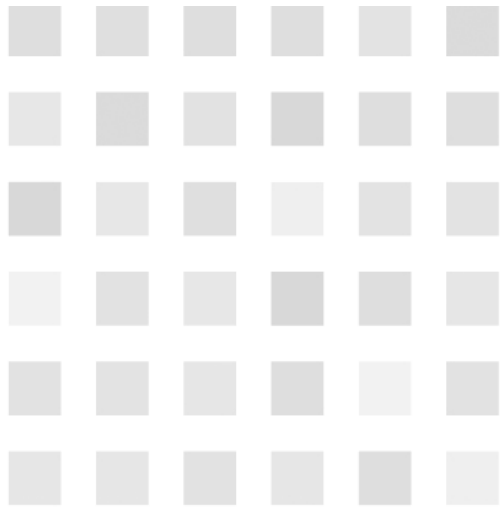
이제 성매매처벌법이 태생부터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바뀐 성매매정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처벌법을 성매매알선 및 구매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 개정 방향에 있어서 스웨덴이 성 구매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스웨덴은 1980년대에 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한 시도(수요가 없다면 성매매가 사라질 것이며,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양성간

14) 성매매방지법 시행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고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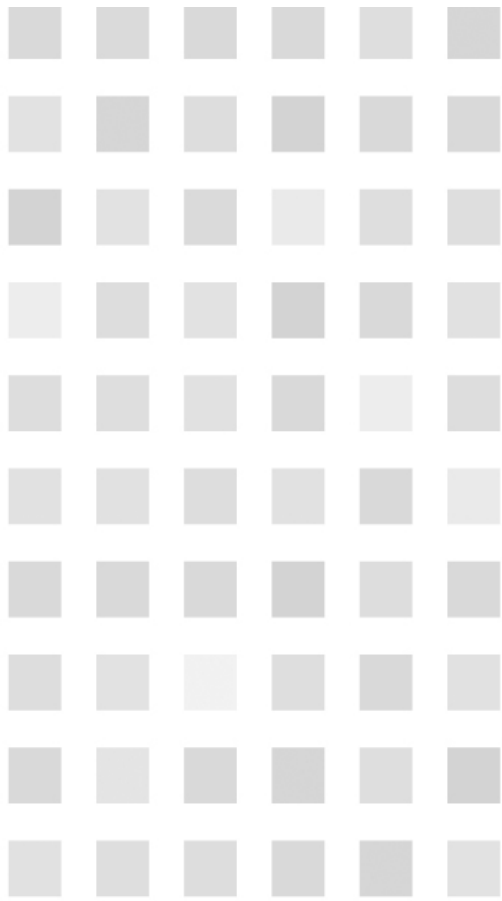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토론문 ‘성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관 : 국회의원 남인순,

의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예방할 것이라고 주장)를 거쳐 1990년 ‘스웨덴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의 쉼터 연합’의 초대로 방문한 미국 변호사(캐서린 맥키논)에 의해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성의 균형을 가정한 상태에서는 성불평등과 성적 종속에 효과적으로 대항해 싸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성매매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고 한다. 스웨덴의 쉼터 연합은 스웨덴 의원들과 연례 모임을 가졌고, 1992년, 1994, 1995년 성 구매자처벌이 의제로 포함되었으며, 수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8년 스웨덴 의회가 성적 불평등의 맥락에서 성매매를 고려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와 여성폭력이 상호 연관된 문제이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열망에 반하는 것이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는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성매매피해자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고 방치되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박탈당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 성학대와 성매매간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 동일하다. 스웨덴에서는 성 구매금지법 시행 후 구매자 수가 2001년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며, 성매매 수요 및 성산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¹⁵⁾.

15) 성 구매금지와 인신매매척결: 스웨덴의 성매매관련법/맥스 윌트먼(여성과 인권 2012년상반기 통권 7호)



부 록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85호, 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3.30>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 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12.19]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1조의3(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5조의2(지원시설과 상담소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16조(지도·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2.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일시 등을 지원시설의 장이나 상담소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18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4.15, 2011.8.4〉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0조의2(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12.19]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12.19]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18, 2012.2.1>

[전문개정 2008.12.19]

부 칙 <법률 제7212호, 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413호, 2005.3.24>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부 칙 <법률 제7784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965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125호, 2008.6.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166호, 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037호, 20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258호,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0261호, 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520호, 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997호,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11285호, 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개정 2011.5.23>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

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5.2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 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전문개정 2011.5.23]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

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3]

제7조(신고의무 등)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3]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3]

제9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13조(관할) ① 이 법에서 정한 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성매매를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서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지 아니하는 수탁기관에 보호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육, 상담, 치료

또는 보호관찰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3]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3]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5.23>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3]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5.23]

제26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계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23]

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

부 칙 <법률 제7196호, 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404호, 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261호, 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697호, 201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048호, 2011.9.15〉 (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

발행일 2012년 9월

발행인 김 금 래

발행처 여성가족부

주 소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TEL. 02-2075-4500 FAX. 02-2075-4780

<http://www.mogef.go.kr>

기획·편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 쇄 경성문화사(02-786-2999)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법적 보호 강화 방안

